

## 해방 전후 한국농촌의 공동노동과 호락질:

공동노동에서 이탈하는 단독노동 배후의  
공동체 이데올로기와 경제논리\*

안승택\*\*

### 1. 들어가기

한말 이래 한국 농촌에서 공동노동의 변화양상을 점검한 선행연구들을 일별하면, 대개 ‘쇠퇴’ 혹은 ‘변질’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포착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 농촌의 대표적 공동노동조직인 두레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생산된 이러한 논의들은, 상품화폐경제의 침투와 농촌 임금노동의 발생을 이 ‘쇠퇴’와 ‘변질’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하는 경향이 있었다(한상복 1980: 166; 김택규 1985: 400~401; 신용하 1985: 254; 주강현 1989: 41, 1989: 74~75; 2006: 724~726). 이러한 논의 저변에는 상품화폐경제나 임금노동을 농촌공동노동과 원리적으로

---

\* 이 글은 본인의 박사학위논문 제4장(pp. 303~448)으로부터 일제시기 공동노동과 단독노동의 변화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과 관련된 내용을 뽑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L0003).

\*\* 전북대학교 쌀·삼·문명연구원 HK교수

나 역사적으로 양립 불가능한 대립물로 간주하는 개념적인 구도가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구도는 다시 농촌공동노동의 기반이 되는 노동의 호혜적 교환이라는 원리가 상품화폐경제나 임금노동의 기반이 되는 시장교환의 원리에 의해 파괴되어 왔다고 파악하는 구도로 이어지며, 호혜적 교환의 원리에 바탕을 둔 ‘전통적 농촌공동체’ 역시 이 힘에 의해 파괴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구도가 가졌던 유의미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더 이상의 논의전개를 어렵게 하는 지적 지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에서 상품경제 및 임금노동과 농촌공동노동이 역사적으로 공존하는 가운데 양자가 발전해왔다는 점이, 다른 한편에서 그 ‘쇠퇴’ 혹은 ‘변질’로 포착된 변화 가운데에서 농촌과 농민이 어떠한 새로운 공동적인 사회형태를 추구하고 구축하여 왔는가 하는 점이, 분석 상의 적절한 지위를 찾기 어려웠던 것이다. 여러 문헌이나 현지조사의 경험은 ‘전통적’ 공동노동 혹은 촌락질서의 ‘쇠퇴’ 내지 ‘변질’ 이후에도 농촌의 농업노동과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공동적인 삶의 형태들이 전개되어 왔음을 확인해준다. 이는 ‘전통적’ 공동노동의 경향적 쇠퇴 배후에서 작동하였던 사회사적 에너지를 포착함으로써, 그 쇠퇴 이후 현대 한국농촌에서 전개되었던 새로운 역사적 국면의 동력과 방향을 확인하는 작업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각종의 교환형태를 지배하는 시장교환의 원리와 호혜적 교환의 원리, 그리고 재분배의 원리를 대비시키는 개념적 구도는 칼 폴라니(1991[1944]) 이래 경제사 및 경제인류학에서 지배적 담론의 지위를 구가하여 왔다. 이는 다시 마셜 살린스의 ‘석기시대의 경제학’이나 울프의 ‘농민사회의 교환형태 및 연계형태’에 대한 분석 등을 경유하여, 한국 농촌에서의 공동노동과 노동교환, 노동력 상품화에 대한 분석의 초기 단계부터 적용 — 물론 다소의 유보조향을 전제하면서, 그러나 그 유보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생략된 채 — 되었다(김광익 1974; 이문웅

1977; 조옥라 1982). 이는 농촌연구 자체의 쇠퇴와 더불어 현재는 별다른 이론적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해방 이후 자본주의 및 소농사회의 새로운 전개와 관련하여 아직 많은 검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같은 개념적 구도의 또 다른 변형태인 ‘국가적 재분배론’은 조선후기 한국경제사를 바라보는 주요한 틀로서 현대도 왕성하게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현창 1996; 손병규 2007).

한편, 플라니와 마찬가지로 말리놉스키와 보아스를 참조하면서, 마르셀 모스(2002[1925]) 역시 총체적 증여의 경제체계가 발전시킨 두 쌍생아, 즉 선물교환의 경제와 상품교환의 경제 사이의 관계를 탐구 — 물론 그 사이에 놓인 무수한 경제제도 및 사건들의 존재를 전제하면서, 그러나 그것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는 생략된 채 — 한 바 있다. 주지하듯이 그의 논의는 래드클리프-브라운, 에반스-프리카드, 퍼스, 레드필드 등 영미 사회인류학자와 레비-스트로스, 부르디외, 데리다, 푸코 등 프랑스 사상가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 바 있다. 또 근래에는 경제적 교환을 광범위한 사회적·문화적 맥락 안에 위치 지우려는 소위 ‘신모스주의’(Weiner 1985; 그레이버 2009[2001]; Kirsch 2006)나 ‘관계적 소유론’(Verdery 2003; Verdery and Humphrey 2004) 진영에 의해 주요한 참조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이를 이 글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개괄한다면, 플라니류의 분석에서는 시장교환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와 호혜성이나 재분배의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 사이의 관계가 과도하게 단절적으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그의 논의에 내재하여 있었거나 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역사적·원리적 연속성에 대한 설명의 미진함에 기인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모스의 문제의식을 채택한 분석들 역시 사람들이 한 명의 개인으로 살아가는 ‘현대’ 사회와 그렇지 않은 ‘총체적’ 사회 간에 근본적 단절을 설정하거나(그레이버 2009[2001]: 65~66), 선물교환의 계약적 성격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이익 추구의 최대화라는

개인주의적 가정 일체를 선물교환의 경제원리로서 설정하려드는 경향이 있었다(같은 책: 79~88). 양자는 모두 상품화폐경제에 적합화된 또는 그와 병존하는 호혜적 교환의 새로운 단계가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의 창출 혹은 재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그 틀 안에 자리매김하기 어렵다.

만일 선물교환의 원리와 상품교환의 원리가 원시사회와 현대사회 모두에 공존하는 것이라면(오명석 2009), 모든 사회는 상이한 교환의 질서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이들을 구분하는 일정한 감각을 지니고 다층적인 교환의 세계를 구축해간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역사인류학의 언어로 환언한다면, 상이한 원리를 지닌 교환의 질서들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서로 대체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지속을 지니면서 중첩—브로델적인 의미에서—되어 존재하는 셈이다. ‘전통사회와 근대사회 사이의 거대한 분리’라는 명제를 거부함으로써 사회들 ‘내부’의 분리를 보는 것이 사회들 ‘사이’의 분리를 보는 것 못지않은 유용성을 갖게 된다는 경제인류학적 명제(Hann 1998: 31~33)는, 다층적인 시간구조에 대한 인식을 통해 역사인류학의 명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식민지 시기 ‘쇠퇴’ 혹은 ‘변질’ 국면 이전 한국 농촌의 공동노동이 공동체적 계기 외에 상품경제 및 임금노동과 관련한 개인적·이해타산적 계기를 아울러 갖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그 전제 위에 식민지시기에 나타난 변화의 동력과 방향을 점검하려는 기획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일제시기 일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생산하던 조선농민의 공동노동에 관한 담론들과 조선총독부의 농촌 정책을 분석한다. 농민사회가 국가에 의해 편성된 식량경작자들의 사회적 구성물인 한, 그 이해를 위해서는 (식민지) 국가정책의 궤적에 대한 분석이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이어 3장에서는 전(前) 식민지 단계로부터 식민지 경제체제를 경과하면서 나타난, 농촌의 공동노동을 지탱하는 경

제논리의 변화를 검토한다. 이는 일제시기 농촌의 공동노동조직 결성과 운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지주계급의 이해(利害)와 전략을 드러내는 계기로 사용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이런 가운데 농민들이 농촌의 공동노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재래의 공동노동조직과 촌락질서가 지니고 있었던 모순이 무엇이었는지, 그 모순이 해방 국면에서 어떠한 해소의 궤적을 밟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 2. 식민지 농촌정책에서 ‘공동체’의 위상변화

### 1) 조선 재래 공동노동의 재평가에 이르는 궤적

한말 그리고 일제 초기 조선의 농업노동현장을 관찰한 일본인들의 기록은 몇 가지의 전형적인 반응양상을 보인다. 특히 이 글의 맥락과 관련하여, 이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 가능하다. 첫째, 노동시간이 적고 놀기 좋아하며 규율이 없고 작업마감이 꼼꼼하지 못하다는 것, 둘째, 육체적으로 강인하여 노동 강도가 세고 작업속도가 빠르다는 것, 셋째, 공동작업의 관행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닌다는 것이다.

가령 농업경제를 중심으로 한말 조선의 상황을 기록한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는 일본 농상무성의 주관 아래 몇 개도별로 같은 시기에 별도의 조사자가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인데, 조선의 노동문화와 관련하여 사실상 서로 같은 이야기를 적고 있다. 절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에 극단적인 노동을 감내하는 힘은 일본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지능이 발달하지 않아 세세한 사려와 궁리나 기민함이 요구되는 일을 하는 능력은 불합격이고 일을 질서 있게 처리하는 법도 없다거나(小林房次郎·中村彦 1906: 268),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되게 노동을 하는 일이 있어도 굶으면 일하고 욕구를 채우면 쉬는 야만인의 행위와 닮아있으며, 체격은 훌륭하지만 노동과 규율을 싫어하여 감독하지 않거나 너그럽게 대하면 반드시 게으름을 피운다(三成文一郎·有働良夫 1906: 252)는 식이다. 면화 따는 일을 맡기며 말이랑을 따라 줄지어 작업하라고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작업을 하다보면 옆줄로 넘어가거나 한 곳에 둥그렇게 모여들기를 반복하더라는 한 일본인의 경험담(小林房次郎·中村彦 1906: 268)은, 오늘날 보면 다소 희극적으로도 느껴지지만, 당대에 그것을 통제하려던 이들에게는 몹시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을 것이다.

한말·식민 초기 일본인들이 파악한바 이러한 조선노동문화론은 조선의 공동작업에 대한 그들의 평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모내기예 질서가 없는 까닭은 한국인 고유의 조방한 습관 탓도 있지만 공동노동의 관행 자체가 거칠고 엉성한(粗瀾) 데에 기인하며, 경쟁적으로 단숨에 몰아치듯(一氣呵成的) 하는 작업방식으로 속도는 빠르지만 작업 중 쉬는 시간이 많아 하루의 작업량은 많지 않다거나(같은 책: 516~517), 모내기와 김매기 등 공동작업의 노동 근면함과 공정(工程) 신속함은 탄상(歎賞)에 족하지만, 많은 경우 술과 음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기에 도저히 집약적인 작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草野嶽男 1908: 30~31)는 등이 그것이다. 요는 일손이 빠르기는 하지만 작업의 치밀함이나 꼼꼼함에서 문제가 많고, 그 원인은 술과 음식을 곁들이고 노래를 부르면서 흥으로 작업하는 방식에 있다는 파악이다. 임금을 주고 이 통제되지 않는 작업집단을 사역시키는 입장에서 그 광경을 본다면, 게다가 사역자가 이러한 작업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일본인이라면, 시간과 임금, 작업량과 완성도 등을 셈하면서 느꼈을 복잡하고 초초한 심경은 꺾어보지 않으면 짐작이 어려운 경지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심정이야 복잡했겠지만, 이들이 개별 조선농민의 강인한 육체적 능력과 공동작업집단의 전격적 — 일본식 표현으로 ‘일기가성적(一氣呵成的)’

— 인 몰아치기 능력에 강한 인상을 받고 있었음도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전형적인 인식들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고착되어, 1920년대 후반 그간 부진하던 기존 산미증식계획의 경신을 전기로 미곡증산이 본격화된 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 활용되었다. 1928년 경상북도 농회 부회장이던 조선인 장길상은 조선농민 피폐의 원인은 과거 정치뿐 아니라 농민 자신에게도 있다면서 구래의 폐습으로 산림남벌, 도시이주, 일본 만항(漫航), 불건전한 방향전환 등과 함께 태만실시(怠慢失時)와 조방소홀(粗放疎忽)을 들었다(張吉相 1928: 27). 1927년에 경상북도 농무과장으로 부임한 호조가 “조선에 처음으로 와서 제일 김흔 인상을 준 것은 편들편들 놓고 있는 사람이 만타는 것이니, 이것은 내지에서 목견(目見)치 못할 현상이다. 일할 것이 업서서 그런지, 일하기가 실향서 그런지 그것은 알 수 업스나, 하여간 놓고 있는 사람이 만흔 것은 놀내지 안을 수 업섯다(北條智勇 1928: 19).”고 적었던 것도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이들의 지적이 미곡증산에 가일층 힘을 쏟을 필요성에 대한 언급으로 이어짐은 물론이다. 이를 단지 조선침략 초기의 일본인들이 받았던 인상이 학습·전승된 결과라고만 보기는 어려우니, 그러한 한말·식민화 초기 인상의 기원이 되었던 조선농민의 제반 특성들이 이 시기까지도 여전히 조선 농촌의 운영 원리로 실제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일본인들보다 가난하면서 더 적은 시간을 일하고 놀기도 더 좋아하는 조선의 농민들’이라는 비판은, 1930년대 초 조선농회가 발표한 조사 자료에 의해 인상비평의 수준을 벗어나 자료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sup>1)</sup> 일본제국의회 의원이던 다카다는 조선농민이 해마다 춘궁에 시달리는 원인이 노동 노력의 부족에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토호쿠(東北), 호쿠리

---

1) 도별로 조사된 조선의 농민당 그리고 농가당 노동시간(전국적으로 일인당 연간농업 노동일수 100~120일, 연간전체노동일수 200일 남짓)이, 일본의 노동시간(일인당 연간농업노동 약 170일, 연간전체노동 약 300일)에 비해 현격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930년대 초에 산출된 조선과 일본의 노동시간 비교자료의 요약으로는 朝鮮總督府(1938: 21~22); 菱本長次(1938: 103~104)를 볼 것.

쿠(北陸) 등 눈이 많은 곳에서도 170, 180일 정도 일하는데, 조선농민의 1개년 노동일수는 대체로 120일 정도에 불과하다는 총독부 농림당국의 이야기를 옮기고 있다(高田耘平 1934: 3~4). 도쿄제국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영전을 거둬서 충청북도지사(1931~1935)를 지낸 남궁영은, “농사작업 중 하루에 대엿 번이나 식사를 하는 것은 조선에서만 견문할 수 있는 악습관”으로 “사린(四隣)이 군집하여 소처럼 먹고 말처럼 마시는 것이 항례가 되어 … 이에 따르는 누습(陋習) 또한 밭살스러운 점이 있으므로 … 그 폐지를 절규한다(南宮營 1934: 13).”고 적었다. 이 ‘누습’의 실체에 대해서는 “논의 제초 같으면 악대(樂隊)를 달려서 춤추고 돌아다니며, 제멋에 취해 오로지 물만을 흐리고 있다. 이를 가족의 일손만으로 정성스레 풀을 뽑는 내지농가와 비교할 때 대강의 짐작으로 지나칠 수 없는 면이 있다. 이대로 두면 몇 년이 지나도 위생적인 가옥을 세우고 따뜻한 이불을 덮을 만큼의 생활향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愚農生 1934: 53~54).”는 지적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는 그간 꾸준히 이어져온 조선의 공동노동에 대한 전형적인 비판들과 함께, 다시금 농업노동 상 공동작업의 의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되살아나게 된다. 그것은 마치 한말·일제 초기 조선의 공동작업관행에 대한 기록들이 그 노동의 거칠고 소홀함에 대한 비판과 빠르고 강인함에 대한 찬사를 아울러 보였던 것을 판에 박은 듯 흡사한 양상이었다. 이는 식민지 지주들과 농정당국 그리고 지식인층 역시 식민통치와 농업증산을 위해서는 조선의 기존 노동관행이나 촌락조직에 일정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반영하는 현상일 터이다.<sup>2)</sup> 이에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 검토하도록 한다.

2) 여기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의 배경을 다소 단순화시켰지만, 당연히 그 사정은 보다 복잡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영희(2003)와 윤해동(2006)이 자세하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적 변화에 대해서는 차후 일제시기의 농업증산 및 농촌개발이라는 차원과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 2) ‘전통적 공동체’의 재조명과 ‘황민적 공동체’의 강제

1920년대 중엽 이후 조선 재래의 ‘전통적 공동체’에 대한 주목이 이루어진 것은, 무엇보다도 재래의 사회조직과 식민지 농정당국의 농사 개량정책을 연결시킬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의 인식 배경으로서 1920년대 후반~1930년대 초반에 부각된 ‘농사개량의 모범부락’들에 나타나는 일련의 한 유형에 주목할 만하다. 1910년을 전후한 시기에 재래의 촌락규약인 동약(洞約)을 새로 제정하거나 사문화된 것을 중수(重修)하면서 ‘새롭게 부흥의 기풍을 다진’ 마을들이 그것이다.

가령 1915년 7월 논산 갈산리에서 동규(洞規)가 제정되고 진흥회로 변신하는 과정은 그 한 전형이라 할 수 있다. 1897년경의 갈산리는 백여호가 거주하는 번창한 농촌이었으나, 1907, 8년 즈음에는 “풍기의 문란을 치(致)하여, 주점과 잡흔 것도 십수 헌(軒)의 다수에 달하여 생업을 행치 안코 함부로 주색도박에 탐닉”하여 “피폐곤비(疲弊困憊)가 아조기극(其極)에” 이른 상황이었다(金鳳翰 1928: 35). 동규 제정의 중심인 물인 방종구는 반일활동 혐의로 밀고 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감시대상이 되었지만(같은 글: 37), 1916년 논산군의 도로개수사업에 적극 나선 것을 계기로 관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같은 해 충청남도장관 오하라 신조(小原新三)가 진흥회 설립을 장려하는 훈령을 내자 12월 갈산리진흥회를 결성하였다(같은 글: 38).<sup>3)</sup> 이후 1917년부터 28년까지 방종구가 각급 관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것만 해도 십여 회에 이르고, 1926년에는 조선총독부 사회과에서 진흥회의 모범으로 영화를 찍어가는 등(갈

3) 1916년 충청남도장관 오하라 신조가 민풍개선 인보상조를 피하기 위해 도 훈령으로 향약정신을 본받은 지방개량기관 창설을 권장함으로써, 충청남도에서 촌락단위 진흥회 조직이 시작되었다(윤해동 2006: 283). 물론 적어도 1910년대의 시점에서 이러한 성공사례가 흔히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대개는 제대로 실행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촌락조직정책과 그 실상에 대해서는 같은 책(269~305)을 볼 것.

은 글: 51), 날로 ‘모범부락’과 그 지도자로서 명성을 쌓게 되었다. 1915년 제정된 동규는 조선총독부의 정책적 장려 이전에 증수된 것이므로, 재래의 사회조직 구성원리 및 그 이념과의 내적 연속성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농정당국에서 바라본바 농사개량의 모범부락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총독부가 이를 식민지 촌락정책의 틀 안으로 받아들이고, 또 총독부가 구축한 새로운 사회제도를 이들 촌락조직이 일정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흥의 기풍’ 배후에서 작동하는 동족마을 종족집단의 힘 역시 위력적이었으며, 이 또한 식민지 지배층이 농사개량에서 재래 사회조직의 힘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30년 평북 정주군 우동에서는 동리의 좌상이었던 김성순이 풍기개선과 산업진흥을 목표로 동약회(洞約會)를 분리·재결성하여 농촌진흥을 꾀하였고, 1932년 우가키(宇栢) 총독으로부터 표창과 조성금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船越光雄 1932: 90). 그 배경에는 “마을이 김씨 한 성으로 이루어지고 성순씨는 그 장로로서 무슨 일이든 영을 한 번 내리면 일치 협력하여 즉시 제반의 개량이 이루어지는 … 모범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소인(素因)”을 지닌 점이 있었다(같은 글: 91). 경기도 안성군 보체리는 정조 때 좌의정을 지내고 재정통으로 이름을 날린 정홍순(鄭弘淳 1720~1784)이 개척한 마을이었다. 1900년경 마을의 대성인 동래 정씨 종가가 몰락하면서 마을 전체가 위기에 처하였으나, 1928년 경기도지사 및 안성군수 등에 의해 산업개발로 표창을 받고 각지로부터 한 달에 수백 명씩 시찰인파가 답지하는 대성황을 구가하게 된다(金鳳翰 1929). 이때 농사개량과 촌민규합을 주도한 것은 한때 몰두하던 사업과 사상운동에서 손을 떼고 귀농한 정인숙이라는 인물이었으니, 정인숙과 보체리의 성공 배경에 동래 정씨 동족집단이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군(郡)의 종용과 30년 이상 구장 경력을 지닌 최병선의 주도 아래 1926년 향약에 토대를 둔 동흥풍회(洞興風會)를 조직·운영하면서, 저축과 축

산, 부업진흥의 모범부락으로 꼽히던 황해도 재령군 합천동 사례(鷄山 1933), 누차의 군 다수확경진회 입상경력을 가진 오용섭의 주도 아래 1932년부터 진흥회를 결성하고 농사개량, 부업장려 등 농촌진흥사업을 전개하던 부천군 고잔리 사례(鷄山 1934)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각기 누대에 걸쳐 해당 마을에서 세거해온 식녕 최씨와 해주 오씨 종족집단이 배경에 있었기에, “일언일동(一言一動)이 즉각 전 부락민에 반향하여 그 통제가 대단히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같은 글: 79)” 일이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일본 본토로부터 도입되어 조선총독부 차원에서 진행된 농촌진흥운동과도 관련이 있었다. 농촌진흥운동은 우가키 총독 부임 직후 1932년부터 총독부 정책으로 본격 실행되었으니, 앞서 평북 우동이 총독 표창을 받았던 등의 일이 모두 이와 관련되어 있다. “조선이 내지를 보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 내지의 폐를 따라 배울 필요는 없는 것이다. … 우가키 총독은 ‘빛은 조선에서’라는 표어를 제시하였으니 이 얼마나 그 말이 장엄하며 그 착상이 현명한가. 우리들 조선에서 일하는 자는 조선을 직시하고 이해하여, 이로써 조선에 준거한 방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山崎延吉 1933: 19).”와 같은 언급은, 조선 재래의 것들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던 당시의 시대정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조선에서 일하는 자는 조선을 직시하고 조선에 준거한 방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농업사조가 일본에서의 사상조류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상황은, 식민지에 고유한 것은 아니로되 참으로 식민지다운 아이러니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기에, 그러한 외래 조류의 존재나 영향 자체가 과대평가되어서도 곤란하다. 미처 10년도 되지 않아, 조선의 농업·농촌정책은 또 다시 새로운 조류에 휩쓸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조류’라는 표현이 민망할 정도로 전 사회에 휘몰아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그 축수의 휘하에 두게 되었으니, 바로 전쟁과

애국, 동원과 통제의 광기가 그것이다. 조선 재래의 것에 대한 재조명과 같은 한가한 논의는 이에 의해 자취를 감추었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농촌진흥운동기의 농촌개발 모델이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적인 성격의 것으로, 모델을 산출한 본국의 정책 및 사회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불안한 기초를 지닌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930년대 후반 이후 전개된 ‘농촌공동체’ 정책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가능하다. 촌락단위에서의 자력갱생과 생산의 공동, 인부상조와 단결협력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는, 1930년대 말 이후 전시체제가 본격화되면서 보다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나 생산기반의 확충, 생산물자의 공급이 축소되는 과정이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시켰다. 이와 동시에 1930년대 전반까지 보였던 조선 재래 관행의 부활을 강조하는 설명들은 사라지며, 대신 애국, 보국과 같은 국가주의적 이념과 슬로건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sup>4)</sup> 물론 이들 슬로건은 1920~30년대에도 존재하였지만, 이 시기에는 그 양상이 훨씬 격한 어조를 띠는 점이 큰 차이이다. 계획생산은 각 마을이 공동책임으로 맡은 것으로 “부락생산 확충계획은 그 인수증(引受證)”이며, 이 계획수량을 각 농가가 분담하여 개별생산 확충계획을 만든 것이므로 누군가 아

4) 김영희(2003)는 1930년대 이후 농촌통제정책의 변화를 크게 농촌진흥운동(1932. 11~1940. 10), 국민정신총동원운동(1938. 7~1940. 10), 국민총력운동(1940. 10~1945. 8)으로 나누어 검토한 바 있다. 이러한 구분은 조선총독부 농촌통제정책의 세밀한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한 정책이 관철되어가는 과정에서 정책변화에 조응하는 일상생활의 실질적인 변화를 짚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의 사례연구지역인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리의 경우(같은 글: 361~464)에서도 그러한 세 단계의 정책에 조응하는 기민한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던 점 역시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큰 틀에서의 변화의 성격을 지적하는 데에 그치고, 정책변화의 세밀한 결들과 식민지 조선의 일상생활의 변화의 세밀한 결들을 정밀하게 대응시키는 작업은 추후의 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김영희는 농촌진흥운동을 초기단계(1932. 11~1935. 1), 이것이 정신운동으로서의 심전개발운동과 결합되는 확충단계(1935. 1~1937. 7), 그리고 다시 ‘시국의 인식 및 생업보국(生業報國)’의 강조로 전환하는 전시체제기 단계(1937. 7~1940. 10)로 구분하였으니(같은 글: 73~114), 이 글에서 주목한 전환은 이 중 제2단계와 제3단계 사이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프든지 하여 차질이 생기면 이는 “인보상조(隣保相助)의 선덕(善德)”을 발휘하여 메워야 하였다(八尋生男 1942: 16). 농촌에서 강고한 협동체의 결성은 농촌이 농촌답게 시국의 요청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며, 개별 농가들의 인보상부(隣保相扶)는 국가의 청탁에 답하려는 노력 이기에 더 없이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개인작업·개인경영에서 공동작업·공동경영으로 농촌이 ‘커다란 전환의 핸들’을 꺾는 것은 국가의 증산명령에 즉응하려는 참됨의 발현이라고도 설명되었다(中谷忠治 1942: 10). 소위 ‘인보상조’는 이제 조선 재래의 미덕이 아니라, 농촌에 부과된, 그 마을에 사는 이상 누구나 짊어져야 하는 ‘황민(皇民)’으로서의 의무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의 핸들’은 정책적 슬로건으로서도, 일상생활의 실천지침으로서도 설득력을 갖기 어려웠다. 1939년 대가뭄이 닥치자 『조선농회보』는 권두언을 통해 관과 민, 지주와 소작·자작의 구별이 없는 총친화(總親和)에 의한 협심동력(協心同力)에 바탕을 두고 자본자조(自奮自助)의 정신으로 이를 극복하자는 논설을 발표하였다(朝鮮農會 1939a). 이어 발표된 가뭄대책 역시 그 첫째 항목으로 ‘이재민에 대한 지도정신’을 꼽은 후, “충량(忠良)한 황국신민으로서 총후(銃後)의 임무에 보효(報效)의 성(誠)을 다함”이라는 기본 지도정신 아래 관민일치로 협력하고, 조선 전체에 빈틈없이 짜인 애국반을 총동원하여 자본자려(自奮自勵)하라고 적고 있었다(朝鮮農會 1939b). 그러나 그러한 충량과 보효의 성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채 강조되는 ‘총친화’는 논리적으로 맘을 돌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공동체적 부조’의 국가적 강제에 다름 아니었다.

거창한 슬로건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맥락에서도, 이 ‘커다란 전환의 핸들’은 비극성이 지나쳐 희극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예컨대 공동노동 막간의 음식 및 주류 제공이 작업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경영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廣田 豊 1941a: 14)

‘도를 넘는 공동 환락의 폐풍’으로 이어진다면(印眞植桐生一雄 1942: 615~616), 전시체제 아래 공동작업에서의 식사제공이 금지되었다. 여주 용은리에서는 식사제공이 금지되자 집에 가서 밥을 챙겨먹고 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농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도시락은커녕 감자나 몇 개 삶아먹고 오는 것이 고작이었으며, 그나마도 없어서 “나는 집에 가서 병아리나 세다 와야겠다.”고 농담을 하며 흠어졌다가 끼니를 거르고 다시 모여들었다(박성봉. 남. 1920년생. 여주 능서면 용은 1리 신우리). 김포 인양 마을에서도 도시락 지참을 의무화한 후 면서기들이 나와서 감독을 하였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작업반원 각자가 자신이 먹을 밥을 직접 싸가지고 갔으나, 일하는 도중 배가 고파 효율이 안 오르자 다시 그날 작업하는 집에서 식사를 내는 것으로 되돌아갔다고 한다(양선아 2006). 위로부터의 추상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면서기 역시 이를 묵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셈이다.

이와 같이 공동작업의 현장이 된 논외의 임자가 제공하는 음식과 술이 낭비라는 것은 일제 말기의 현실과 거리가 먼, 대개 터무니없는 생각이 아닐 수 없었다. 혹 농사가 많아 인부고용도 잦은 부농이나 대지주라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현실에서라면 농촌부유층이 그것을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인보상조’요 ‘화충협동’이지, 그것이 낭비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도시락을 지참하라는 것이 ‘인보상조’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것이 조선총독부의 추상같은 지시도, 감독을 나온 면사무소 직원도 어쩔 수 없었던, 조선식 모내기 외의 오랜 작업관행이자 일제시기 조선 농민사회에도 의연히 존재하던 경제현실이었다.

### 3. 일제말기 농촌 공동노동의 향배

#### 1) 공동노동에 내재한 단독노동 개별정산의 원리

중세와 근대, 현대를 불문하고, 한국농촌에서 공동노동이 가지는 기술적·경제적 의의는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농사와 관련하여만도 논과 밭의 모든 작업에 걸쳐 여러 작업을 포괄적으로 함께 하는 것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 농외작업까지 포괄하는 것, 축력 사용을 매개하는 것 등으로 다양할 뿐 아니라, 성별의 구분이 있고 특히 여성노동의 경우 “이에 의해 행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였다(廣田 豊 1941: 13). 그런 한편으로 공동노동에 참여하는 농민들의 경작 면적은 서로 달랐고, 공동노동에 의존하는 정도 역시 서로 달랐다. 따라서 공동노동에 참여하는 정도의 차이에 따른 초과분은 다시 보상되어야 했으며, 1940년경에는 현금결제가 우세하였다(같은 글: 14). 이 ‘현금결제의 우세’에 대하여 기존의 논의들은 ‘상호부조적 노동공동체의 변질 혹은 쇠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한상복 1980: 166; 조옥라 1984: 137~138; 김택규 1985: 389; 신용하 1985: 259; 배영동 2000: 293; 주강현 2006: 724). 이는 일면 타당한 견해이지만 그 타당성은 제한적이며, 이 일면을 전체로 확장하여 이해한다면 현실을 왜곡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한국 농촌의 가장 대표적인 공동노동조직인 두레의 경우를 보자. 두레의 운영방식을 요령 있게 설명한 1930년경의 보고에 따르면, 두레는 희망자를 모아 ‘두렁늪이’(두렁늪이)라는 방식으로 공동제조작업을 하고, 매일의 식사는 공동인원 중 재산가에게 의뢰하여 순번으로 술과 밥을 내게 하였다. 또 제조가 끝나면 참여인원 중 최소면적을 표준으로 하여 그 이상의 면적을 가진 사람이 1반보(反步, 300평) 당 약 40전의 비율로 금전을 내게 하고, 작업 중 음식 값으로 한 사람 당 하루 쌀

1되의 대금과 술값을 제한 후 잔금을 공동으로 분배하였다. 물론 이런 기본적인 형태 외에 곳에 따라 공동노동에 부치는 면적을 모두 똑같이 하고 식사는 각 호 순번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변이형들이 있었으며, 공동작업이 끝난 후 여력이 있으면 두레패원 외 타인의 논을 제초한 후 임금을 분배하거나 공동비용으로 충당하는 일도 있었다(金榮浩 1930: 89). 현물로 결제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의뢰한 농가가 그 구입비용을 내야했고, 1940년대 두레공동노동에서 개별 노동의 임노동적 성격은 농민들도 실제 인지하는 바였다(조경만 1987: 136).

위 설명에 나타난 ‘두렁넘이’라는 표현은 논두렁에 의해 구분된 개별 경작지와 해당 경작자의 차이를 불문하고 그 경계를 넘어 마을에 있는 모든 논에 대해 일제히 제초작업을 실시한다는 뜻이니, 두레가 지닌 노동공동체적인 성격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고온리에서는 “두레를 일명 ‘두렁거리’라 하였는데 두레농사가 이 논저 논 관계없이 다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하였으며(국립민속박물관 편 1994: 244; 주장현 1995: 96), 여주군 북내면 오금리의 한민수 씨(남. 1929년생) 또한 “두레는 오늘은 이 골짜기를 하고 내일은 저 골짜기를 하고 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같은 군 농서면 용은리의 박성봉 씨(남. 1920년생) 등 역시 “논매기 작업은 대동이다 모여서 두레로 하고 일이 끝난 다음에 평수를 따져서 계산을 했다. 두레 논매기는 ‘두렁넘이’라고도 했다. … 그게 ‘하루에 두 집 논도 매고 세 집 논도 매고 두력을 넘어 다니면서 논이라는 논은 모조리 매고 다닌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논두렁으로 구분된 경계를 넘어 골짜기 별로 마을의 모든 논에 대한 제초를 일제히 실시한다는 점을 두레공동노동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규정하는 설명방식은 이처럼 지역의 경계를 넘어 널리 존재하였다.

그런데 위 설명들은 모두 두레가 지니는 철저하게 이해타산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정한 공동노동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

안은 ‘내 논 네 논이 구별이 없이’ 공동체적으로 작업을 하지만, 마을 내 해당 작업이 끝나면 현장에서 즉시 초과노동에 대한 정산·지불이 이루어져야 했다. 즉 1930~40년대의 두레는, 부족사회에서 관찰된 바와 같은 호혜적 — 일반화된(*generalized*) 것이든 균형 잡힌(*balanced*) 것 이든 — 공동체로서도, 혹은 ‘공동’의 원리에 대한 현신을 엄격히 요구 하는 강제적 공동체로서도 운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점은 앞서 검토한 수원 사례(金榮浩 1930)보다 늦은 시점까지 보다 ‘원형적’인 혹은 ‘노동공동체적’인 원리로 두레를 운영하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양평군 단월면 산음1리 산대의 윤재정씨(남. 1934년 생)는 “대두레로 논을 매는 것은 6·25 나고 3년 정도까지 했는데, 왜정 때는 하다 말다 했던 것 같다”면서, “두레는 한 사람 앞에 닷 마지기씩 은 차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매는 값을 내놔야 하는 것이다. 닷 마지기는 차고 들어가고, 더하는 논이 두 마지기면 술 한 동이를 내고, 네 마지기면 점심이나 저녁 밥 한 끼를 낸다. 오늘은 누가 점심을 해오너라, 누가 점심에 술 가져오너라 하면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다. 그래도 남는 논이 있으면 돈으로 내는데, 돈을 내면 두 마지기에 한 사람 하루 품값을 낸다”고 하였다. 1930년 수원 사례에서는 참여인원 중 최소면적이라고 표현된 기준이 산음리에서는 ‘차고 들어가는 닷 마지기’였다고 볼 수 있다. 수원에서는 이를 초과하는 작업량/경작면적을 현물 혹은 현금으로 처리하는데 후자가 우세했던 반면, 산음리에서는 가능한 한 노동과 현물로 처리를 하고, “그래도 남는 논이 있으면” 그때서야 현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화폐에 의한 정산을 가능한 한 피하던 산음리에서도 역시 개인의 초과노동에 대해 그대로 넘어가는 일은 없으며, 술과 식사 등 현물로 상환할 수 없었던 작업량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었다.

이들 사례보다 앞선 시기에는 어떠했을까. 1910년대 중반의 농사(農社) 즉 두레에 대한 보고에 따르면, 그 작업방식은 “어떤 마을에 대해

서 단숨에 밀어붙이는 식(平押し)으로 김매기를 행하는 것(豊田重一 1916: 138)”으로 1930~40년대의 두레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두레꾼의 노동에 대해 마지기당 17전의 임금을 지주가 지급하거나(같은 글: 139), 두레 공동작업의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하여 해당 농지의 경작자가 반별(反別)로 일정한 임금을 주도록 하고 있었다(張基昌 1917: 145). 이 시점에서 이미 평균 혹은 기본 작업량을 넘어선 두레꾼의 초과노동에 대해서는 이에 미달하였던 자들로 하여금 보상토록 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레는 한편으로 품앗이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고 품앗이는 당사자 간 노동의 등가교환을 전제한다고 보았을 때, 그것을 초과하는 노동을 제공한 자가 어떤 식으로든 이를 보상받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불가피하다.<sup>5)</sup>

자료 자체는 다소 불충분하지만, 1900년을 전후한 시기나 19세기의 상황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는 경기도 연천군 고대 마을의 두레에 대해 “반일(半日) 정도의 차이는 굳이 따지지 않으며 1일 이상에 이르면 돈으로 지불한다(小林房次郎·中村彦 1906: 426).”고 적었다.<sup>6)</sup> 역시 1950년대 양평 산음리의 경우처럼, 한나절 정도의 초과노동은 ‘노동공동체’적인 견지에서 보상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지만, 하루 이상의 초과노동을 하였다면 돈으로 이를 갚아야 했던 것이다. 충북 제천군 금성면 구룡리를 조사한 스즈키 에이타로 역시 “각 호의 경영면적과 노동력에는 많고 적음이 있으므로 …

- 
- 5) 두레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설명 중 하나가 ‘두레도 일종의 품앗이’라는 것이었고, 이 점은 이 글의 기본 전제가 되어 있다. 그러나 두레 공동노동이 사적 계기를 통해 변형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와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 6) 물론 이는 경기·강원·충청 지역의 공동노동관행에 대해 설명하면서 실제로 본 상황(實見狀況)을 적은 20개 지역(강원 4, 경기 10, 충청 6)에 대한 서술 중 하나이므로 그 의미가 과대평가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나머지 19개 사례에 대한 기술은 “20여 명이 논에서 호미로 매고 있었다.”든가 “중식을 위해 25, 6명이 논두렁을 따라 가는 듯 농군(農軍)들은 절로 저마다 한 마디씩 한다.”는 식으로 그저 지나가면서 관찰한 바를 적고 있는 데에 불과하였다. 즉 오직 이 연천 고대 마을의 사례만이 문답을 통해 확인한 운영방식의 실재를 기록한 것인 만큼, 그 의미는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그것들은 노동량을 계산할 때 정확히 산정된다. … 두레에서 노임은 옛날부터 돈으로 지불되었는데 … (鈴木榮太郎 1944: 161~162)”라고 적은 바 있다. 물론 이 ‘옛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그리 오래되지 않은 관행을 ‘옛날부터’라고 설명하는 경향은 종종 있는 일이다. 대개의 두레 연구물은 이 스즈키의 보고를 인용하면서 상품화폐경제의 침투에 따른 시대적 변화의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오히려 적어도 현지답사가 이루어졌던 1943년 시점에서 노동들이 알고 있었던 한의 ‘옛날’부터 초과노동을 현금으로 엄격히 정산하는 관행이 존재해왔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1850~70년대 경북 예천군 대저리에서 두레패로 추정되는 ‘동군(洞軍)’에 의한 김매기 공동노동이 끝난 후 답주가 운답전(耘畚錢)을 지불하였던 사례(이영훈 2001: 270) 역시 이 두레공동노동에 대한 현금결산의 전통을 적어도 19세기 중엽까지 끌어올리게 한다.

이렇게 본다면, “근년 노동보수가 현물을 대신하여 현금으로써 하고 또 이를 위해 연고보다 월고를 선호하는 경향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협동이 용이하게 농촌으로부터 그 그늘을 감추지 않는 것은 과연 여하한 이유에 근거하는가(廣田 豊 1941: 14).”는 식의 문제제기는 일정하게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선에서 공동노동(혹은 ‘협동’)과 임금노동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미 내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인 상태에서 일제시기 상품화폐관계의 심화라는 현상을 맞은 것이기 때문이다. 1920~30년대의 상황에서 이앙·제초·수확 때 나타나는 공동작업을, ‘인보상조(隣保相助)를 목적으로 하는 조선 재래의 미풍양속’이라는 견지에서만 포착하는 일이 현실에도, 역사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면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이었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동일한 논점은 현대 한국의 두레 연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2) 식민지 조선경제 안에서 공동노동의 자리

앞 절에서 검토한 바, 공동체적 계기와 이해타산적 계기를 아울러 지니는 두레의 기본성격, 그리고 19~20세기 초 단계에서의 상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일제시기 두레조직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위상을 점검하기로 하자. 늦어도 1920~30년 기간에 이미, 적어도 수원지역의 경우, 두레는 경향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상태였다. 김영호(金榮浩 1930: 90)에 따르면, 1920년경 수원군내 21면에는 모두 321개의 두레패에 5,752명의 두레꾼이 속해 있었는데, 1929년에는 241개 3,859명으로 그 숫자가 감소하여 있었다.<sup>7)</sup> 1920년경의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두레패의 숫자로는 약 25%가, 두레꾼의 숫자는 33%가 이 10년간에 사라진 셈이다. 이 시기는 산미증식계획에 의해 논이 면적이 증가하고 있었고, 농외산업부문으로의 인구이출도 본격화하기 전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이 대부분 여전히 농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앞서 1920~30년대의 기본적인 농정이념으로 설명한 재래의 농업관행을 복원·활용하려는 관점은 1910년대부터 이미 제출되고 있었다.<sup>8)</sup> 정책의 수준에서의 이야기라면, 두레와 같은 농촌총력단위의 공동노동조직이 억압되고 있었다고까지는 말하기 어려

7) 인용 원문에는 752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자가 해당 기간에 약 4할 9푼의 감소율을 보였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5,752인의 오기일 것이다. 저자가 두레패 숫자의 감소율을 약 3할 3푼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4할 9푼이라는 두레꾼의 감소율은 1929년의 두레 참여인원에 대한 10년간 감소인원의 비율이다.

8) 가령 다음을 보라. “... 종래 농사농악(農社農樂)에 대해서는 거의 그 자치에 맡겨 하등 지도감독을 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장래 상당한 보호독려를 가하여 그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는 일의 간절함을 인정한다. 단지 일고할 만한 것은, 유래 조선농민의 정도는 심히 천박하여 각종 권장사항에 대해서도 항상 번잡하고 번거로움을 입에 달고 있으며 때로 장려의 취지를 곡해하여 농민을 괴롭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일이 있다. 농사(農社) 등에 대해서도 지나친 규정으로 제어하려고 할 때는 삼시간에 쇠퇴를 볼 것이 분명하다. 고로 가능한 한 그 자치의 정신을 작량하여 대체적인 감독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豊田重一 1916: 140).” 뒤에 보게 되듯이, ‘지나친 규정으로 제어하려들면 삼시간에 쇠퇴를 보게 될 것’이라는 판단은 1930년대 후반 이후의 상황에 비추어 대단히 적절한 지적이었다.

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 논농사의 발전과 궤를 함께 해온 두레는 왜 이 시기에 이미 축소되고 있었던 것일까. 위 글의 저자인 김영호는 그 이유로 “농악에 의해 작업을 행하므로 일이 조방해져서 도리어 불리를 일으키는 바가 있는 점”, “농가에 빈부가 생겨서 공동작업에 불편을 초래한 점” 그리고 “농촌도 종전에 비해 점점 복잡화하여 단결력이 약해지는 경향 있는 점”을 거론하였다(金榮浩 1930: 90). 여기에서 두레의 작업결과물이 조방하여 불리하다는 것은 한말 이래 일본인들이 누차 지적해왔던 것으로, 새삼 두레 쇠퇴의 원인이 될 만한 현상이 아니다. 게다가 두레작업은 기본적으로 고용노동에 비해 저렴하였고(〈표 1〉 참조), 작업결과물이 조방함에도 불구하고 농번기에 대규모의 고용노동을 구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위에, 조선과 같이 계절기후의 변이가 두드러진 곳에서는 가능한 한 일사천리로 제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문제가 될 수 없었다(豊田重一 1916: 138~139). 그 다음 원인으로 지목된 두 가지를 보면, 이는 사실상 같은 현실의 다른 측면을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빈부의 격차가 생겼다 함은 이 시기에 격하게 진행된 일부 지주로의 토지집중과 자작농의 몰락, 영세소작농의 증가, 한마디로 농민층 분해와 식민지 지주제의 심화를 언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농민층의 양극분해는 농촌문제의 복잡화와 단결력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즉, 일제시기에 두레조직의 퇴조를 가져온 기본적인 원인은, 자작농의 몰락/영세소작농의 증가라는 농민층 양극분해의 추세였던 것이다.

한편 자작농의 몰락/영세소작농의 증가라는 현상은 농업노동자에 가까운 대규모의 농촌 피고용자집단을 형성하여 두레의 외부에서 두레의 존재를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두레의 내부에서 두레의 성격을 변모시키고 두레의 조직원리를 해체하는 방향으로도 작동하였다. 원리적으로 자작농의 몰락/영세소작농의 증가가 두레의 작업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표 2〉 1910년대 중반 두레와 고용인부의 경제성 비교

	비목	면적/인원	단가	금액	적요
두레 (農社)	제조품값	30마지기	0.170円	5.100円	농사인원은 60인 0.5일로 종료
	술·밥값	60인	0.075円	4.500円	술 오전 1회 중식 1회 1인당 7전 5리
	계	-	-	9.600円	1마지기 제조비용은 32전에 해당
고용 인부	제조품값	30마지기	0.230円	6.900円	고용인부 30인 1인 1일 1두락 작업량 기준
	술·밥값	30인	0.100円	3.000円	술 오전오후 각 1회, 중식 1회분
	인부가족	15인	0.050円	0.750円	부속 15인의 중식
	계	-	-	10.650円	1마지기 제조비용은 35전 5리

\* 자료출처: 豊田重一 1916: 138.

\* 비교: 고용인부 비목에 인부가족을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토요다는 “인부 중 빈곤한 자는 가족을 데리고 와서 식사하는 일도 있고, 10인의 인부라면 5인은 이러한 부속물”이라고 적었다.

영향은, 두레 작업 정산의 과정에서 품앗이 원리에 의해 교환된 노동으로 간주할 몫이 줄어들고 두레꾼들이 임금으로 챙겨야 할 몫이 그만큼 커진다는 점이다. 이 경향이 강화될수록, 두레는 점차로 촌락 내 자작농들의 품앗이—물론 그 부등가분은 현물 혹은 현금으로 즉각 상환되어야 했던—라는 기본성격을 탈각하고,<sup>9)</sup> 영세소작농 혹은 전적으로 고용노동에 의존하는 농촌 주변인들의 임금노동 청부집단이라는 성격을 갖게 된다. 가령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수인 히로타는 “[두레에 속한]<sup>10)</sup> 단체원의 경지에 대한 작업을 완성하면 촌내 혹은 멀리 외부 마을의 아직 작업이 완성되지 않은 곳에 그 작업을 응원함을 볼 수 있다(廣田豊 1941: 14).”고 적은 바 있다. 두레는 기본적으로 촌락단위 안에서의 품앗이 원리에 기반을 두고 촌락 내의 논매기를 ‘두령넘이’의 방식으로 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립한다. 그런데 이 설명에서처럼 마을 안에 별도로 ‘응원을 나가는’ 논의 존재한다는 것은, 해당 작업이 두레의 기본적인 노동과는 별도의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뜻한다. 게다가

9) 각주 5)를 참조할 것.

10) 이하 인용문에서의 간단한 인용자 주는 [ ] 안에 표시하기로 한다.

‘촌내’뿐 아니라 ‘멀리 외부’에 있는 마을에 ‘응원을 나간다’ 함은, 촌락 내 공동작업의 필요 충족이라는 차원에 기반을 두고 개인별 초과노동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계산방식에 의해 해당 노동을 소화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즉 촌락단위 두레공동노동은, 일시적인 작업수요에 맞추어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할 필요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속 두레꾼들의 경작지를 공동으로 제초하는 수준을 벗어나, 전문적인 노동청부집단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sup>11)</sup>

이 변화의 동력을 이해하려면, 두레와 고용노동에 의한 제초작업의 경제성을 비교한 <표 1>의 분석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두레를 이용하면 임금노동 고용에 비해 한 마지기당 3전 5리, 30마지기에 대해서는 1원 5전의 비용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sup>12)</sup> 이는 결국 두레의 초과노동에 대한 임금이 품팔이 임금에 비해 싸다는 뜻이며, 두레 공동노동을 하고 초과노동에 대해 임금을 받는 일이 위주인 영세소농의 입장에서는 저임으로 노동을 착취당하는 결과가 된다. 즉 품앗이 노동공동체의 원리에 의한 두레 김매기의 비용절감효과는 농민층 분해의 추세 아래 농인 영세소농의 입장에서는 노동착취의 기제에 불과한 것이다. 촌락단위 두레공동노동이, 일시적인 작업수요에 맞추어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할 필요에 따라 촌락 내 남성 농민들이 경작지를 공동으로 제초한다고 하는 조선후기 이양법 보급 이래의 형성 원리로부터 이탈하여, 전문적인 노동청부집단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게 되었던 배경이 여기에 있었다.

두레 김매기가 지주나 부농 등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것이었다는 점은 당대 지식인들의 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면적의 제초 작업은 도저히 일가의 힘 또는 소수 용인(傭人)의 힘만으로는 제대로

---

11) 이 글에서 다루는 시기 두레조직 자체의 변화 양상과 고지대 등 노동청부단체의 부상 등 공동노동조직과 관행의 실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을 통해 다루는 기회를 가질 것이며, 여기에서는 ‘호락질’을 중심으로 단독노동을 둘러싼 문제들만을 다루기로 한다.

12) 양평 산음리의 윤재정씨 역시 두레에서의 현금 정산은 두 마지기에 대하여 하루 임금을 지불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하루 한 사람 한 마지기를 하루 작업량으로 삼는 일반적인 임금지불관행에 비해 저렴한 것이다.

이루어질 수 없기에 두레 공동노동은 대지주일수록 이익이 많고, 소농은 자기 경작지의 작업은 빨라 끝나고 나머지 시간은 남의 논에서 지내야 하므로 ‘약간의 불리함’이 불가피하였다(豊田重一 1916: 139). 따라서 대농 또는 중농의 경우 머슴이 없는 이는 물론 머슴이 있는 이들조차 제조작업에 십여 명의 인원을 고용해야 했기에, 동리의 자산가, 세력가 혹은 연장자인 농민이 주동이 되어 두레를 조직하게 되었던 것이다(張基昌 1917: 144~145). 본래 두레라는 것이 대지주 또는 대농일수록 유리하고 소농에게는 불리하므로 농업이 부수적 업무가 된 영세농, 특히 자영지가 없는 일고(日雇)에게는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이 ‘봉사’의 성격을 띤 공동노동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판단(강정택 2008[1941]: 286)은 이와 관련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인식 역시 같았다. 시흥시 죽물동의 안경호 씨(남. 1928년생)는 “여럿이 논농사 있는 사람이 단합을 지기 위해서 두레를 하게 되면, 웬만한 사람은 사람을 얻을 수도 없다.”고 하였다. 두레는 농촌에서도 ‘있는 사람’이 주도하여 결성하는 것이었다. 영세소농의 입장에서는 두레 내부의 공동작업에서 자신의 작업이 뒤로 밀릴 공산이 클 뿐 아니라 같은 시간 노동력을 파는 것보다 두레공동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많지 않은 경작지이나 마 불가결한 남의 일손을 얻기 위해서 두레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남의 일손을 얻을 필요가 아예 혹은 거의 없는 이, 즉 극단적인 영세소농일수록 이러한 유인은 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이 두레에 참가하지 않게 될 유인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 화성시 청원리의 최호경 씨(남. 1925년생)는 “있는 사람은 모 먼저 내고 없는 사람은 나중 내는데, 없는 사람 모낼 때 있는 사람 집에는 애벌[초벌 논매기] 들어간다구요. 지금도 빈익빈부익부라고 하지만 그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라고 하였다. 이 상황에서 두레가 가동되었다면, 모내기가 늦었던 영세소농은 자기 논을 모내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남의 집 두레 논매기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모내기의 적기이행 여부가 다시 수확의 차이로 연결되  
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그저 농사력(農事曆)에 관한 객관적인 설명일  
수 없다. 최호경씨는 그것이 빈익빈부익부의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니, 작업이 뒤로 밀리는 영세소농들이 두레에 유인을 느끼지 못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셈이다.

#### 4. 공동노동으로부터 농민의 이탈과 새로운 경제논리의 부상

앞서 인용한 것처럼 ‘두레는 대지주 또는 대농일수록 유리하고 소농  
일수록 불리하여 영세농이 이에 관심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던  
강정택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들[영세농]이 농계 혹은  
고지대(雇只隊)라는 대량수요에 대응하는 노동청부단체를 조직하게 된  
것은 농사(農社)의 부정적 발전으로서 흥미로운 일이다(강정택 2008  
[1941]: 286).” 여기서 말하는 ‘고지대’란 일정한 경작노동을 청부한다  
는 뜻인 ‘고지’를 단체를 조직하여 행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한반도 중  
부 이북에서는 고지 대신 주로 ‘자리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 외  
에 ‘도급’ ‘양자도’ ‘맥김’ ‘매기(미기)’ ‘매독(미독)’ 등 명칭이 이에 통  
용되는 용어들이다(久間健一 1935: 212~213). 용어 여하 간에, 그리고  
단체조직 여하 간에, 기본적으로 원리는 동일하였다. 미리 선급(先給)으  
로 쌀 혹은 돈을 받고 필요한 작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증언에 의하면 자리품의 선급은 대개 쌀로  
이루어졌는데, 쌀과 노동의 교환비율은 ‘가락’이라고 부르는 하루 분의  
작업량을 기준으로 매겨졌다. “쌀 한 말에 세 띠락”이라는 식이다. 이  
교환비율은 대개 일제 말~해방 직후 쌀 한 말에 3일이었다가 한국전쟁  
을 전후하여 5일, 때로 6일까지 폭락한 것으로 설명되지만, 구체적인  
조건 및 변화상은 마을마다의 상황과 개인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달랐  
던 것으로 보인다. 자리품으로 쌀을 먼저 얻어먹고 일로 갚는 방식 역시

지역과 시기에 따라, 혹은 쌀을 주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였다. 논의 한 자리를 정해놓고 모내기부터 논매기까지 혹은 벼 베기까지 맡아서 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해야 할 일을 사전에 정해놓지 않고 ‘아무 때나 부르면 가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역적 관행에 의해 규정을 받든 혹은 개인의 성향 및 관계에 의해 규정을 받든, 이렇게 쌀을 미리 빌려주고 일로 갚는 조건들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지주나 부농 등 자리품을 주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었다. 자리품은 기본적으로 ‘청부인에게 미리 임금을 주어 이로써 일 년 간의 벼농사 노동력을 보장하는 제도’로서(廣田 豊 1941: 13), 자리품 쌀을 얻는 농민은 농촌에서 생활이 가장 불안정한 계급이었고, 미리 얻는 품삯이 아니면 12월부터 3월까지의 생계가 막연한 상태에 있었다(久間健一 1935: 244). 일제시기 농촌에는 농민층분해에 의해 영세농이 무수히 산출되어 반실업자가 수없이 방황하고 있었으므로, 두레의 관례를 묵수할 필요 없이 현물이나 현금으로 저렴한 임금을 주고 품을 사서 가족 노동력과 결부시키면 훌륭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印真植 1942: 37~38). 따라서 지주·부농들은 쌀을 선대하여 저임으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을 선택하였고, 이로써 노동력 확보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변잡하기도 한 품앗이 등 재래의 공동노동에 더 이상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강정택 2008[1941]: 292). 이와 같이 자리품은 궁핍한 처지에 있는 영세농의 농한기·춘궁기 상황을 이용하여 미리 농번기의 품을 확보함으로써 노동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지주층 그리고 부농층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농민들의 설명을 통해서 보다 생생히 포착된다. 여주 오금리 중간말의 박수일 씨(남. 1933년생)는 “그렇게 쌀을 얻어먹는 것도 아무나 안 주고, 일 잘해주는 사람들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제 선자 금이라고 하는지, 선대금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 주려면 밤에 몰래 오라고 그래서 주고 그랬으니까…”라고 하였다. 그만큼 자리품 쌀을 얻기가

쉽지 않았고, 이를 주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줄 것인가를 면밀히 선택하고 있었던 것이다. 화성 덕 1리의 권오상 씨(남. 1923년 생)가 “자리품을 얻어먹으면 자기 일이 바빠도 오려면 착 가야한다.”고 한 것이나, 용인 농서리의 박승익(남. 1927년생) 씨가 자리품으로 쌀을 얻어먹고 나서 “빌려준 사람이 부르면 아무 때고 가서 갚아야 했다. 자기의 일이 급해도 자리품 갚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한 것 역시 모두 같은 지점에 대한 설명이 된다.

이러한 지주·부농층의 촌락공동체 내 노동력 운영에 관한 주도권은 때로 관행이나 상식의 도를 넘는 횡포로까지 이어졌다.

내가 12살 때부터 품앗이를 다녔는데, 그때 당시는 쌀 한 말을 가져다 먹고 닳새, 엿새씩 일을 해주던 시절이야. 그게 내가 신 살 그때쯤까지 그랬는데, 이 뒷집에 있는 놈에 쌀 닳 말 갖다 먹고 그거 일을 해주느라고 하루 종일 하는 걸로 [한 말 당] 6일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남한테 해꼬지하고 피뎠이먹는 놈이 다 내 앞에 죽었어. 여기는 ○○네가 그랬다고, ○○씨가 일을 해주고 그랬고. 악질로 하는 놈 다 뒤흔지 하나 있는 놈 없어요. 그게 죽지 못해 갖다 먹는 거지. 오금리가 몇 백 호라더라. 여기서 남한테 거시키하게 살던 놈이 다 뒤흔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선의로 해야지. 보태주지 못하나마 거시키 해야지(김중만. 남. 1917년생. 여주군 북내면 오금리 점말).

여러 대째 그 집 땅을 해먹으면 식량이 떨어졌을 때 꾸어주고 대신 필요할 때 일하러 오라고 부르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면 쌀 한말에 다섯 가락, 여섯 가락, 많으면 열 가락까지 그 집의 농사일을 해주어야했다. … 못 갚으면 눈을 한 마지기, 두 마지기씩 빼앗긴다. 또 산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산을 빼앗기기도 했다. 이렇게 굶어모아서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부지들과 갈등이 있었다. … 한 집안인 박씨끼리라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원래 집이 가난해서 결혼하고 처음 세간날 때 박광○ 씨 소유의 터에 집을 잡았다. … 마을 지주고 같은 밀양 박 씨다. 그 집 땅 몇 마지기를 빌려 농사를 부치니까 꼭 그 집의 일도 함께 해주야 했는데, 가지 않으면 땅을 떼이고 만다. 내가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집에 가서 품을 파는 것은 돈이 없거나 쌀이 없으면 꼭 부자인 그 집에 가서 얻어 써야 하기 때문이다(박성원. 남. 1933년생.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앞의 사례에서 김종만 씨는 일제시기와 해방 후의 지주·부농 등 자리품을 놓던 자들에 대한 격한 감정을 표시하였다. 그것은 이미 오랜 세월 전의 일로 분노가 사그라지고 교훈적인 표현으로 순화되었지만, 당시 자리품을 놓고 악독하게 굴던 자에 대한 적대감만은 여전히 생생하다. 다음 사례는 이러한 적대감 배후의 권력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지주가의 일상사에 대한 자발적 부역으로 나타나며, 설사 집성촌의 한 집안 간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권력과 불안, 그로 인한 일상적인 부역의 의무에서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부역을 시키는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해 보상을 하거나 음식 등을 베풀었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농사를 두고 지주가의 농사에 달려온 이의 심정을 편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생활에 쪼들려 자리품으로 선대를 받고 지정된 날 이를 갚으려 나선 결과 품앗이 시기를 놓친 하층농민이 오히려 비싼 일고를 고용해야 했던 현실(강정택 2008[194]: 292)이 이들의 설명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양상은 기본적으로 수요공급의 관계였기에, 논리적으로는 노동력 판매자라고 하더라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도 있는 것이었다. 현실에서 이 관계의 기본성격 자체가 그렇게 역전되는 시기는 결코 오지 않았지만, 단지 어떤 경우에는 노동력의 판매자가 이 순환의 고리를 쥐고 일정하게 유리한 입장에서 사태를 전개시킬 수도 있었다. 지주가 몰래 불러 자리품을 주는, ‘일을 잘 하는 사람들’의 경우였다. 앞서 ‘피 빨아먹는 놈, 악질로 하는 놈들이 다 나보다 먼저 뒤흔었다’고 혹평을 했던 김종만 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이었다.

품앗이라는 게 참 억울하죠. … 품앗이는, 자기 일 할 때는 눈에 까듯이 하고, 남의 일 가서는 허둥바둥 하고 … 내가 [품앗이를] 이태를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 그래서 사람들이 날 무척 미워했다고. 그래서 내가 오래 사는 거예요. … 내가 일 하는 게 하루에 논 네 마지기를 매고, 이틀이면 여덟 마지기를 매고 그래요. 현암리 평장 사람이 열두 마지기를 매러 나오고, 나는 내가 일 하는 게 남아서 네 마지기를 매러 나간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열두 마지

기를 때려 여덟인가 아홉인가 왔는데, 거기 일도 다 끝나기 전에 내가 일 끝나고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 되었지만 원래 힘이 세어요.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 두 거리 세 거리 한다구요. … [눈을 때려면] 왼손도 힘이 좋아야 되고, 왼손이 빨라야 벼 폭[포기] 쓰러진 걸 일으키고 왼손으로 땅을 반지르하게 매만지고, 그걸 더디 매고 못하는 사람은 한 폭밖에 못하거든요. 나는 세 폭까지도 내가 잡아당기고요.

그는 모내기와 논매기를 모두 품앗이로 하던 마을에서, 일을 잘 못 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과 품앗이를 하는 것이 ‘억울’해서, 남들에게 욕을 먹어가며, 품앗이를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일을 다녔다. 그러나 일하는 능력이 특별했기에 열두 살 때부터 품앗이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일을 잘 한다는 소문이 났었기에 이미 열네 살 때부터 스무 살짜리 선배들을 제치고 먼저 품일꾼으로 불러 다닐 수 있었다. 그가 이십대의 한창 무렵에 자리품 등 고용노동의 활성화와 일제말기의 노동력부족이라는 현상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농촌의 ‘공동체적’인 노동관행으로부터 빠져나오기는 조금 더 힘들었을 것이다.

연배는 상당히 차이이지만 의왕 월암동의 최건철 씨(남. 1933년생) 역시 같은 입장에서 품을 사는 것과 혼자 일을 하는 것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보통 품값을 계산할 때 하루 한 마지기에 모내기도 사람 하나, 논매기도 사람 하나로 쳐서 하루 열 마지기 일을 하려면 열 사람을 얻는 것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하다보면 하기에 따라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마지기 반 정도도 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혼자서 두 사람 몫도 할 수 있고, 급하면 셋이 할 일도 혼자 할 수 있었다. 최건철 씨는 이렇게 혼자 다니며 자기 일을 하는 것을 ‘호락질’이라 부른다고 하였다.<sup>13)</sup>

13) 조경만은 호락질을 “개별 농민의 단독노동을 포함하여, 가족원이 자기의 경작지에서 수행하는 노동”으로 정의한 뒤, “가족의 사적경영(私的經營)은 오래 전부터 농민들의 생산활동의 기본단위이자 경제행위의 기본적 준거로 작동하면서, 한국 농촌 경제질서의 기반을 이루면서 동시에 그 표상이 되어 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조경만 1987: 132).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에서 호락질은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가족끼리 농사를 짓는 일’로 정의되는데, 이에 비해 그의 정의는 ‘단독노동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 된다. 이는 농촌현지에서 수집한 호락질의 용례들을 반영하려는 고심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며, 필자 역시 그의 정의에 동의한다.

두 사람의 설명을 이으면, 김종만 씨가 남의 욕을 먹어가며 마을공동체의 품앗이에서 빠져나와 혼자 남들 두세 사람 몫을 하며 비싼 임금을 받아냈던 것이 바로 최건철 씨가 이야기하는 호락질의 결과가 된다. 화성 장지리의 박운병 씨(남. 1927년생)가 “자리품 일꾼들은 해가 뜨기 전부터 알아서 나와서 이틀 할 것을 하루에 다 해치워버리는 사람들”이라고 한 것, 1940년 전후 부여 추양리에서 400~1,000평 규모의 농지를 소작·자소작하는 5~6호의 농민들이 “낮에는 남의 일을 다니고 새벽과 늦저녁에 자기 집의 일을 하면서 일정하게 품앗이로부터 이탈하여 가족노동, 품앗이, 일고(日雇)의 특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던 것(조경만 1987: 139~140)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의 무기는 남들보다 빠른 일손과 억센 육체적 능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부지런히 일하면서,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이를 비난하는 타인의 구설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었으니,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곧 ‘호락질’이다. 지주와 부농들은 이들에게 자리품을 주기 위해 남들 몰래 불러 선급금 혹은 선급미를 지불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시체제에 접어든 조선총독부 및 그 휘하의 지식인들이 ‘긴박한 시국 아래 보수의 다과(多寡)에 의해 작업의 정조(精粗)가 나뉘지 않는 농민정신(中谷忠治 1942: 9~10)’을 강조하며, 국가적 의무로서의 공동체적 협동노동을 강제한 것은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였다. 그러나 ‘긴박한 시국과 정세’를 조성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은 조선의 농민에게 그러한 비장한 애국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었을 뿐더러, 식민지 지주계 강화의 국면 아래 영세소농들에게서 공동작업의 경제적 의의는 점차 쇠퇴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는 두레의 재조명을 통해 기대했던 바와 같은 ‘공동체’의 정서가 이 상황에서 발양되기 어려웠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술과 식사의 제공이나 풍물·오락과 같은 종래의 공동노동관행이 지녔던 ‘공동체적’ 유인들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시체제 아래에서의 급속한 공

업화와 각종 강제동원으로 인한 농촌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하여, 농업 노동 임금을 토건노동자 임금의 9할 수준에 강제적으로 고정하면서(정연태 1992: 220) 농업노동력 부족 지역에 대하여 상대적 유희 지역의 노동력을 이동시켜 ‘조정’을 이루는 정책을 취하였다(같은 글: 218~226). 사흘 분의 임금을 받고 남들 사흘 할 일을 하루에 끝내는 능력이 각광을 받게 되었던 정책적 배경이 여기에 있었다. 이 상황 아래에서 공동체적 협동생산의 강제는, 그로부터 빠져나와 ‘이웃으로 응원’을 나가기만 하면 그보다 나은 조건의 임금노동이 널려있는 일제말기 노동력 부족의 현실 아래에서, 그리고 지주와 부농들이 남몰래 이를 이용하려 들던 현실 아래에서, 오히려 영세소농들이 저마다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이러한 발견은 상품화폐경제와 임금노동의 전개라는, 식민화 이전부터 진행된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민층 분해의 추세 아래 지주의 이익이 관철되는 농촌의 ‘노동공동체’ 내에서 점점 영세화하는 소농들이 이해타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붙들어 매던 마지막 안전판을 해체시킨 것은, 농촌 촌락에 대한 일제의 ‘황민적 공동체’의 강제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자리품을 활용하여 양질의 저임노동을 확보하려는 지주와 부농의 전략, 그리고 총독부의 농촌촌락에 대한 도를 넘어서는 공동체의 강제가, 오히려 농민들로 하여금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확실히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일제말기의 노동력부족 국면에서 재탄생하고 있던 구래의, 그러나 면모를 일신한 농촌노동관행들은, 패전과 함께 일본제국주의가 물러가고, 이어서 농지개혁에 의해 지주제가 해체되면서 그것을 ‘농촌공동체’에 옮겨매고 있던 굴레들을 벗어버리게 되었다. 지주제 해체에 의해, 지주와 부농들의 주도 아래 결성되던 두레 공동노동은 주요한 동력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다. 일제말기에 소멸되었던 두레들이 해방 직후 바로 부활되었다가 곧 다시 사라지고 말았던 현상은 이러한 맥락에

서만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sup>14)</sup> 물론 농지개혁 자체에 의해 농촌의 뿌리 깊은 계급대립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화성 장지리의 박운병 씨(남. 1927년생)는 소작관행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자 곧 농지개혁 이야기를 꺼냈다. 집성촌 안에서 같은 집안끼리 지주와 소작인으로 갈라져 있는 경우, 예컨대 열 마지기 소작을 부치고 있었으면 그 중 여섯 마지기만 농지개혁 대상지로 올리고 나머지는 지주가 자경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제대로 분배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서로 집안간이니까, 열 마지기면 열 마지기는 너 하고 네 마지기는 내나라 그런단든지 해서... 토지개혁이 되어도 경제권이 그 사람들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쉬우면 거기 가서 얻어먹어야 될 판이니까, 그걸 안 된다 소리를 못하지. 그러나 농지개혁 하고도 대지주들은 4, 5천 평 정도씩은 농지를 가졌다고. ... 그러나 부자는 지출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돼? 그게 별안간 동결이 안 된다고.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을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땅 팔아먹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 술 한 잔 먹고 땅 내놓고, 그러다가 자꾸 넘어가는 거지. 그게 세상이라고. 아버지가 있을 때는 어떻게 못하지만 아버지가 죽으면 자꾸 땅 팔아서 털리는 거야. 그게 또 그렇게 부자가 털려야 [부자가 아닌 사람이] 앞도 구경이나 하지. 부자가 털어먹지 않으면 못사는 사람한테 땅이 돌아와? ... 그 당시에 지가증권<sup>15)</sup>이라는 게 있었어. ... 그런데 지가증권이 막 나오자마자 6·25가 터졌어. 피난을 가는데 그걸 다 챙길 수 있나? 그리고 화폐개혁이 있었어. 만 원짜리가 10원짜리가 되고. 그래서 증권이 휴지가 된 거야. 그래서 부자들이 망한 거지. 6·25 사변 안 터졌으면 나중에

- 
- 14) 주강현(1995: 83~84)에 따르면, 그가 조사한 60개 마을에서 두레가 소멸한 시기는 일제말기가 16, 해방 직후가 14, 한국전쟁기간 및 그 직후가 18, 1950년대 중반이후가 3, 1960년대가 4, 1970년대가 5개였으며, 경기도 화성지역에서는 일단 일제말기에 다수가 소멸한 후 해방직후 일시에 되살아났다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충청도 대전지역에서는 일제말기에 소멸한 두레들이 해방 후에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 채 그대로 사멸하는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경기남부의 마을들도 대개 주강현이 조사한 화성지역의 사례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경기와 충청 지역 간에 이와 같은 지역차가 실재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향후 면밀히 그리고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 15) 지가증권이란 농지개혁 때 정부가 매수한 농지의 보상으로 지주에게 발행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액면은 매수한 농지 보상액과 당해연도의 그 농지에서 생산되는 주생산물의 수량으로 표시하며, 상환방법은 5년간 균분연부로 매년 액면 농산물의 법정 가격으로 산출한 통화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유가증권으로서 ① 귀족재산 매수시 대금지급가능, ② 담보제공 가능, ③ 양도 가능 등의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서울 가서 증권 가지고 적산을 맡아 가지고 부자들이 되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고(박운병. 남. 1927년생.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농지개혁에 의한 소작농지의 분배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집안으로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지주가 농지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마을의 경제적 강자로 남아있을 것이고 영세소농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불가피하기에, 소작인은 정당한 권리인 소작지의 분배를 주장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렇듯 농지개혁은 그 자체로 농촌의 기존 권력구조, 경제적 위계관계를 완전히 청산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농지개혁은 기존의 권력구조와 경제적 위계관계의 재생산을 담보하던 지주제적 토대를 파괴하였고, 지주가는 농지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우월한 경제적 위치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권력과 경제력을 재창출할 만한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구 지주계급이 한국전쟁기간 피난지 부산에서 지가증권을 할인하여 팔아 연명하고, 폭발적인 인플레이 하에서 이를 헐값으로 매수한 이들이 훗날 액면가에 의해 적산(敵産)을 불허받아 산업자본가로 변신한 과정은, “피란 중의 부산 광복동 거리에서 벌어진 지주계급과 자본가계급의 대역전 드라마”이자 한국사회에서 “산업자본의 원시축적” 등으로 규정된 바 있다(김성호 1991: 206~207). 박운병 씨는 거의 같은 관점과 논리에 의해, 그러나 농민의 언어로서 이를 설명하였다. 도시와 공장에서 전개된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지가증권을 쥐었던 지주와 이를 사들인 훗날의 산업자본가였다면, 토지를 보존한 지주와 이들로부터 농지를 사들이거나 이들에게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 “앞을 구경”하게 된 영세소농들은 농촌에서 벌어진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이었다.<sup>16)</sup> 이들이 농촌에서 혹은 도시로 이주하여 벌이게 되는

16) 부여 추양리(홍성흡 1986: 46~47; 조정만 1987: 139~140), 논산 병사리(김현숙 2007: 20~21), 정읍 도계 마을(조옥라 1982: 212~213; 1984: 130) 등 몇몇 농촌연구 사례에서, 농민층 분해의 추세 가운데에서도 극히 일부이나마 ‘개인의 노력’으로 부를 축적한 인물들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 것은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특

이 ‘드라마’의 후반부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니, 단독노동과 가족노동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의 호락질<sup>17)</sup>은 이들의 경제적 무기였던 셈이다.

## 5. 맺으며 — 공동노동과 호락질에 나타난 이념들의 재배치

문화인류학 등 농민사회 연구의 전통에서 농민과 경작자 일반을 나누는 기준은 국가에 의한 생산자들의 편성 여하에 달려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에 의한 농업·농촌·농민 정책을 도외시한 채 농민사회·농민문화의 분석을 시도하는 일은 허망한 결론으로 귀착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동아시아의 농민사회는 오랜 국가적 사회편성의 전통 아래 그 역사적 궤적을 걸어온 만큼, 국가적 기획을 역사적·구조적으로 이해할 필요성 역시 그만큼 절실해진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하한 농민사회도 국가적 사회편성정책의 의도와 내용 그대로의 모습을 지닐 수 없다는 점 또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농민사회는 농민사회대로 저마다의 전통과 현실에 바탕을 두고 이에 대응함으로써 고유의 특수한 성격을 만들어간다. 양자는 서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호 변형되며, 이 점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의 성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세 조선사회와 식민지 지배 하의 근대 조선사회가 서로 다를 수 없을 것이다.<sup>18)</sup>

이 글에서 다룬 문제들을 조선에 진출한 식민자로서의 조선총독부와 일본인 관료·지식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경멸의 대상으로서 식민지 조선의 공동노동문화라는 담론의 현실은 농업증산을 위해 이에 의존

---

히 대개의 경우 이들의 경제적 성장에 대한 농민들의 설명이 해방 이후 지주계급의 몰락에 대한 언급과 짝을 이루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은 지극히 인상적이다.

17) 호락질의 정의에 대해서는 각주 13)을 참조할 것.

18) 조선후기사회에서 북학파(혹은 소위 ‘실학파’) 사상가들이 추구하였던 중국 화북식 농법 수용론과 소농들이 추구하던 윤작(輪作)·간작(間作)·혼작(混作) 농속(農俗) 사이의 기술적 차이와 거기에 나타난 이념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안승택(2007: 189~225)을 참조할 것.

하야야만 했기에 재평가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재평가를 이념적으로 추동한 담론적 기반은 일본 내에서 국가적으로 전개된 농촌진흥운동의 가르침이었다. 이를 조선에서 광범위하게 적용시키려던 그들의 기획은 ‘빛은 조선에서’라는 슬로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이 일본에서 보았던 성공과 달리 생각만큼 농촌의 자주적인 운동으로 이어지지 않았기에, 그 귀결로 나타난 일방적인 관(官) 주도의 진흥들은 곧 한계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다. 전시체제기의 ‘비상한 시국과 정세’ 아래에서 나타났던 담론과 실천의 괴리는 ‘개인의 이해에 흔들리지 않는 총친화’의 강조가 오히려 농촌공동노동으로부터 단독노동의 이탈을 가속화시켰던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식민지 조선의 농업·농촌정책에서 나타났던 담론의 현실과 실천의 현실 사이의 괴리는, 일본제국주의의 판도 안에서 나타났던 공동체적 부조에 대한 국가적 장려 — 흔히 ‘강제’로 귀결되고 만 — 의 정책이 아래로부터 상향하는 에너지와 만나지 못했을 때 어떠한 현상으로 귀착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참조의 지점이 될 것이다. 경멸이나 장려, 강제는 그들의 몫일 수 있었지만, ‘개인의 이해에 흔들리지 않는 총친화’는 결코 그들이 조선에서 구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의도 여하 간에 그들은 스스로의 실천에 의해 보다 저렴하게 더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하려던 지주의 이해관계와 일체적 합치 상태에 놓임으로써, 영세소농화의 길을 걷던 식민지 조선 농민들의 농촌 내에 존재하던 공동체적 계기들로부터의 이탈을 추동하였던 것이다.

식민지 지주의 현실과 관련하여서는, 경제외적 강제를 완화하고 병작제를 활용하여 온정주의적 지주-소작관계로 전환한 조선후기의 양반 지주와, 조선조 말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개항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한 새로운 유형의 경제적 지배집단을 대비한 기존의 논의들(宮嶋博史 1982; 김용섭 1992; 김건태 2004)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던 일부의 고관(高官) 대지주를 제외하고 진행된 토지 소

유의 영세화에 대응하여, 문중조직을 결성함으로써 족적(族的) 결속력을 높이고, 지대수준을 낮추어가면서까지 동족집단의 상호부조적 성격을 강화하여 사족으로서의 체면과 가격(家格)의 유지에도 애를 쓰는 모습이 그 특징 중 하나 — 물론 가부장제적 질서라든가 비동족원 출신 하민들에 대한 차별적 지배의 관철과 함께 — 로 삼고 있었다. 반면 후자는 온정주의적 차원에서 동족 또는 비동족의 소작인들을 배려하기 보다는 철저한 지대수취와 적극적인 미곡상품화, 고리대와 연고(年雇)·일고(日雇)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경도된 것을 특징으로 삼는다. 화성장지리의 박성원 씨가 겨냥했던 동족원 지주가의 행태 역시 이러한 변화추세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동족집단의 소작인에게 지주가가 주도하는 공동노동이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경제적 의미 외에 그와 관련하여 실제로 그가 투신할 수 있는 문화적 의미가 발견될 필요가 있다. 하물며 비동족원의 작인·고공(雇工)들에게 있어 그러한 문화적 의미는 더욱 긴요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음식과 술 제공의 금지, 풍물과 오락의 금지와 같은 일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닐 수 있는 까닭이다. 노동자는 한편으로는 집단에,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고용주에게 그의 생명과 노고를 바치는 것이니, 노동자가 사회보장에 협력해야 한다면 그의 노동으로 이익을 본 자들은 단순히 임금을 지불하는 것만으로는 노동자에게 빚을 갚은 것이 아니다(모스 2002[1925]: 253). 생산자=교환자는 자신이 생산물이나 노동시간보다 더 많은 것을 교환하고 있으며 그 자신의 어떤 것, 즉 그의 시간과 생명을 주고 있다고 느끼니,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그를 태업과 생산성 저하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같은 책: 272~273). 지주계급에 의한 전면적인 이해관계의 추구가 농촌총락 안에서 그들의 사회적 기반을 안으로부터 허무는 작용을 하고, 자리폼의 활용을 통해 얻은 편리와 효율이 영세소농들로 하여금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노동이 애초의 운영원리를 벗어나 착취적 기제가 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소농의 공동노동과 단독노동에 나타나는 경제논리에 대한 이해는 보다 중층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며, 이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 출발점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흔히 간과되어온 바 그대로, 소농경영의 기본은 공동노동이 아니라 단독노동과 가족노동, 곧 ‘호락질’이라는 점이다. 이 글은 적어도 19세기 중엽 이래의 두레 등 공동노동이 이와 같은 사적 이해타산의 계기를 아울러 지녔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관련 연구사를 검토하면 이에 대해 국가적 사회편성의 정책이 역사적으로 취해온 태도는 다분히 이중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의 양반지주제로 사회적 전환은 대농장의 농노가 아닌 병작제 하의 독립적 소농이 농민적인 사회적 생산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체제라는 점을 인식한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김건태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배계급은 이와 아울러 농민들로 하여금 국가적 사회편성과 동원에 대해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응할 수 있는 태세에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소농적 분산화의 요구와 집단적 동원의 요구, 이 두 요구를 소농생산체제와 관련한 국가적 편성의 근저에서 작동하는 주요한 계기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하자면 식민지 지주제 하에서 지주의 취향은 다분히 단순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이윤의 추출을 최대의 전략적 선택의 기준으로 삼게 되거나,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유지한 경우에도 새로운 전략적 단계를 향한 기술적 능력을 확보하는 데에 실패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주계급의 소멸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 국면에서도 부분이농 등을 통해 지주-소작관계가 온존 혹은 재생되면서 소농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동원 및 잉여추출의 구조가 활발히 작동하였던 점은 향후의 작업을 위한 주요한 과제가 된다. 이 새로운 국면이 지주적 계급지배와 반상제적 신분관계의 유제를 근간으로 삼는 구래의 ‘공동체적 이데올로기’를 벗어던진 혁신적인 현상이었던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17

세기에 성립한 조선 농민사회(소농사회)의 최종적인 형식으로서 소농적 질서가 사회에 전면화된 것이라는 점이 아울러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생산에 있어서 소농의 진정한 대립물은 지주가 아니라 국가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향후의 논의를 위한 탐침으로서 던져두기로 한다.

논문접수일(2009년 4월 15일), 논문심사일(2009년 6월 4일), 게재확정일(2009년 6월 27일)

## 참고문헌

강정택 (박동성 역)

- 2008 “조선의 공동노동조직과 사적 변천”, 『식민지 조선의 농촌사회와 농업경제』, 서울: YBM Si-sa, pp. 271-308. [(원본 초간) 1941 “朝鮮に於ける共同労働の組織とその史的變遷” 『農業經濟研究』 17 (4), 東京: 農業經濟學會: 525-575].

국립민속박물관 편

- 1994 『한국의 두레』,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김성호

- 1991 “농지개혁연구; 이데올로기와 권력투쟁을 중심으로 하여”, 『국사관논총』 25: 177-214.

김영희

- 2003 『일제시대 농촌통제정책 연구』, 서울: 경인문화사.

김용섭

- 1992 『한국근현대농업사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양선아

- 2006 “농촌문화의 생산기반”, 정승모 외, 『시흥시 농촌문화 보고서』, 시

흥시사편찬위원회.

윤해동

2006 『지배와 자치: 식민지기 촌락의 삼국면구조』, 서울: 역사비평사.

이영훈

2001 “18·19세기 대저리의 신분구성과 자치질서”, 안병직·이영훈(편), 『맛질의 농민들: 한국근세촌락생활사』, 일조각. pp. 245~299.

정연태

1992 “1940년대 전반 일제의 한국농업 재편책”, 『국사관논총』 38: 203-238.

조경만

1987 “농업노동형태의 생태경제적 맥락에 관한 일고찰: 1940년 전·후 추양리 두레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19: 113-166.

주강현

1995 『두레연구』,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鷄山

1933 “蛤川洞興風會と洞幹部の苦心”, 『朝鮮農會報』 7(10).

1934 “隠れたる篤農研究家吳龍燮氏”, 『朝鮮農會報』 8(9): 74-83.

廣田 豊

1941 “朝鮮に於ける農業勞動”, 『朝鮮農會報』 15(2).

高田 耘平

1934 “朝鮮の農村は三體一致”, 『朝鮮農會報』 8(7): 3-5.

久間健一

1935 『朝鮮農業の近代的様相』, 東京: 西ヶ原刊行會.

宮嶋博史

1982 “植民地下朝鮮人大地主の存在形態に関する試論”, 『植民地朝鮮の社會と抵抗』, 東京: 未來社.

金鳳翰

1928 “論山郡模範農村葛山里振興會를訪問하고”, 『朝鮮農會報』 2(12).

1929 “安城郡優良農村保體里と鄭寅肅氏の事業”, 『朝鮮農會報』 3(7).

金榮浩

1930 “水原地方に於ける農旗ツレベ”，『朝鮮農會報』4(8): 88-90.

南宮營

1934 “農村更生と營農の基調”，『朝鮮農會報』8(1): 11-14.

菱本長次

1938 『朝鮮米の研究』，東京：千倉書房.

北條智勇

1928 “朝鮮農業에 對한 第一印象”，『朝鮮農會報』2(4): 19-20.

山崎延吉

1933 “朝鮮農事の管見(四)”，『朝鮮農會報』7(1): 15-20.

三成一郎・有働良夫

1906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慶尙道・全羅道』，東京：農商務省.

船越光雄

1932 “表彰されたる模範部落—平北定州郡牛洞”，『朝鮮農會報』6(4): 90-97.

小林房次郎・中村彦

1906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京畿道・忠清道・江原道』，東京：農商務省.

鈴木榮太郎

1944 『朝鮮農村社會踏査記』，東京：大阪屋號書店.

愚農生

1934 “農軍生活の慘狀を讀む”，『朝鮮農會報』8(11): 52-55.

印貞植

1942 “朝鮮農業勞動力の動向”，『春秋』昭和17年9月號(《印貞植全集》2, 서울: 한울, 1992. pp. 571-585).

印貞植[桐生一雄]

1942 “朝鮮に於ける農業勞働の再編成過程(下)”，『滿洲評論』23(18)(《印貞植全集》2, 서울: 한울, 1992. pp. 613-621).

張基昌

1917 “農社に就て”, 『朝鮮彙報』 大正6年 8月號.

張吉相

1928 “年頭所感”, 『朝鮮農會報』 2(1): 26-27.

朝鮮農會

1939a “卷頭言”, 『朝鮮農會報』, 13(9).

1939b “旱害の概況と之が對策に就て”, 『朝鮮農會報』 13(11): 112-113.

朝鮮總督府

1938 “勞務ノ調整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諮問案參考書』  
(《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74).

中谷忠治

1942 “朝鮮農村再編成の基盤をなすもの”, 『朝鮮農會報』 16(10): 7-13.

草野嶽男

1908 “群山附近農況視察”, 『韓國中央農會報』 2(8): 29-32.

八尋生男

1942 “時局下農村指導當面の課題”, 『朝鮮農會報』 16(5).

豊田重一

1916 “農社農樂に關する研究”, 『朝鮮彙報』 大正 5年 4月號.

〈Key concepts〉: labor exchange, wage labor, *Dure*, colonialism, peasant society, historical anthropology

## Collective Labor and *Horakjil* of Peasantry in Colonial and Post-Colonial Korea:

Community Ideologies and Economic Reasons behind the  
Single-handed Labor Breaking Away from Collectivities

Ahn, Seung Taik\*

Reexamining the precedent researches on changes in Korean rural collective labor since the end of 19th centuries, we can find that they usually grasped the conditions and processes of such changes in terms of decline or deterioration. The researches also had the tendency to regard the market exchange and wage labor as causal factors to bring about such a decline or deterioration.

It seems there underlay the conceptual schemes to assume market exchange and wage labor have the forces to destroy the principle of reciprocative exchange which prescribed the rural collective labor, and that therefore they cannot coexist with it both in theoretical and empirical terms. Under the shades of those schemes, it was hard to see the appropriate analytical positions posing two main historical facts opposing them. One is that collective labor had been developed with the expansion of market exchange and wage labor until those

---

\* HK Professor, Institute of Rice, Life & Civiliz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anges grasped as decline or deterioration. The other is that rural societies and peasantry have developed various types of new collective social forms since the changes.

This article aims to characterize the Korean rural collective labor as being driven by individual-based and interest-seeking motives besides of communal ones at least since mid-19th century, and to reestimate the changes that occurred in the colonial period at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For these objectives, this article analyzes the colonial discourses and the government-general's policies on Korean rural collective labor (chapter 2), traces the historical path of the principles of collective labor and tenant system in rural societies (chapter 3), and examines the cognitions and momentums of peasantry under the such conditions (chapter 4). In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s a direction 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collective labor and single-handed labor, which can be utilized to reconsider main characters of peasant society.

